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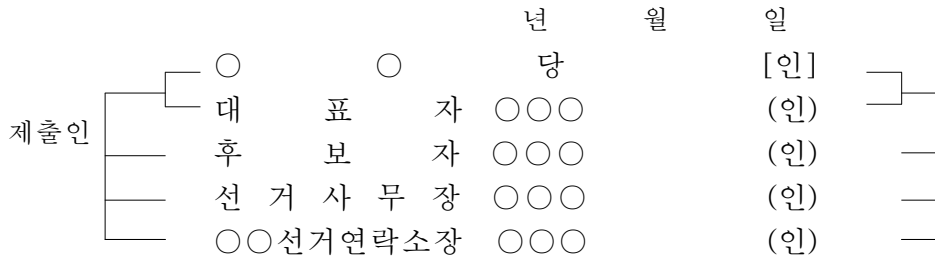
[별지 제17호서식의(가)] 삭제 <2005.8.4>

[별지 제17호서식의(나)] (규칙 제29조제4항·제30조제5항·제124조 관련) <개정 2026. 4. 22.>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정 당 명 :
3. 후보자성명 :
4. 제출내역 :

품 명		작성수량	제출하여야 할 수 량(가)	제출수량 (나)	부족수량 (가-나)	첨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 상·지역	비고
선 거 벽 보							
선 거 공 보	책 자 형	일반형					저장매체 수: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 지역:)
		점자형					
	전 단 형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작성수량"란과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을 각각 적습니다.
2. 후보자정보공개자료(법 제65조제9항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말합니다)의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부족수량에 그 100분의5를 더한 수를 적습니다.
3. "제출수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4. 첨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란은 제출하여야 할 수량보다 적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5.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함)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6. "전단형 선거공보"란은 대통령선거에서만 작성하고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7. 저장매체(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로 전환·저장된 저장매체를 말합니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비고"란에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만, 저장매체를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출하여야 할 수량보다 적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의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에 추가로 적습니다.

[별지 제17호서식의(다)] (규칙 제30조제7항 관련) <개정 2025. 2. 20.>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선거 ○○선거구

1. 인적사항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세)	직 업	학 력	경 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3. 세금납부·채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채납실적(천원)				후 보 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채 납 내 역		
		채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채납액	
계				
후 보 자				
배 우 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소명서

--

- 주: 1.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를 적지 아니합니다.
 2. 후보자 성명은 한글로 적고, 학력은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었거나 적고자 하는 학력을 2개 이내로 적으며, 직업·경력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재산상황"은 후보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별로 각 신고대상재산의 가액을 총액으로 적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한 경우에는 "고지거부"라고 적습니다.
 4. "병역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적습니다.
 가.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처분 내용
 나.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는 군별, 계급, 전역·소집해제사유
 다. 복무중인 신고대상자는 군별 및 계급과 "복무중"이라 기재
 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중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은 그 병역처분 내용
 5. 세금납부·채납실적, 전과기록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채납실적"란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월(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 발급받은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채납증명서에 따라 작성하되, 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세금납부·채납증명에 관한 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채납액을 완납한 경우 '채납액 누계' 하단에 완납일자를 기재하되 여러 건의 채납액을 모두 완납한 경우 최종 완납일자로 작성), 건당 10만원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채납은 제외합니다.
 6. "전과기록"은 후보자 본인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죄명과 형량 및 그 처분일자를 적습니다(실효된 형을 포함함).
 7. "소명서"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채납실적 및 전과기록에 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만 그 란을 만들고 소명하려는 내용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8.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의 둘째면에 적되, 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내용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9.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적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정정·삭제 요청서

선거명		선거구명
(정당)	성명	소속정당명
(후보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1. 정정 또는 삭제 매수
2. 정정 또는 삭제할 내용
3. 정정 또는 삭제 이유

년 월 일에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64조제5항)·(제65조제13항)에 따라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내용을 정정(삭제)하고자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정당)·(후보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이 신청서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적지 않습니다.
3. "정정 또는 삭제 매수"란에는 선거구 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매수 중 정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매수를 모두 기재합니다.

(선거벽보)·(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이의제기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선거법상 신 분	
	전화번호			
이의제기 대상 후보자	선 거 명		후보자성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p>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벽보(「공직선거법」 제64조제6항)·선거공보(「공직선거법」 제65조제13항)] 게재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이의제기자 ○ ○ ○ 인</p> <p>붙임 증명서류 1부</p> <p>○○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주: 1. "선거법상 신분"란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선거인 등을 적습니다. 2. "이의제기 내용"란에는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벌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및 그 게재내용을 적습니다. 3.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을 적지 않습니다.</p>				

